

# JYPE ESG위원회 운영 규정

2023년 2월 6일 제정

(주)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

# ESG위원회 운영 규정

## 제 1 장 총 칙

### 제1조 【목적】

이 규정은 주식회사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ESG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2조 【적용범위】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주식회사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정관(이하 “정관”이라 한다)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# 제3조 【직무와 권한】

위원회는 이사회가 위임한 바에 따라 다음의 직무를 수행할 권한을 갖는다

1. 위원회는 회사가 기업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환경, 사회, 지배구조를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.
2. 위원회는 회사의 ESG 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, 쟁점을 발굴, 파악하여 회사의 ESG 경영전략 및 방향성을 점검하고 이와 관련된 성과와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평가, 검토한다.

## 제 2 장 구 성

### 제4조 【구성】

- ① 위원회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.
- ② 보상위원회 위원은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,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.

### 제5조 【위원장】

- ① 위원회는 제8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 시 의장이 된다.
- ③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④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.

## 제 3 장 회 의

### 제6조 【종류】

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.

### 제7조 【관계인의 출석】

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

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#### **제8조 【소집권자】**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제5조 제3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 소집절차는 제7호 제2항을 준용한다.

#### **제9조 【소집절차】**

-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그 7일전에 각 위원에 대하여 문서, 구두, 전자 문서 기타 발송 및 수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.

#### **제10조 【결의방법】**

- ① 위원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③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#### **제11조 【부의사항】**

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① 사회책임경영 전략 수립 및 ESG 과제 추진 계획 검토
- ② 환경, 사회 관련 주요 이슈 및 대응책
- ③ 지속가능경영 관련 심의 및 의결이 필요한 사항
- ④ 지속가능경영 절차 및 규정 수립에 관한 사항
- ⑤ 기타 지속가능경영 관련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#### **제12조 【의사록】**

-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여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### **제 4 장 보 칙**

#### **제13조 【보고】**

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#### **제14조 【간사】**

- ① 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.
-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를 담당한다.

#### **제15조 【규정의 개폐】**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### **부 칙**

#### **제1조 【시행일】**

이 규정은 2023 년 2 월 6 일부터 시행한다.